

2020 제 5 호

#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 ◆ 맞춤형 법제정보

중 국 낚시어선업법제  
스웨덴 기업활력법제

## ◆ 외국법제동향

미 국 가상화폐세법  
미 국 「공정주택법」  
일 본 임대용 주택관리법제  
독 일 암호화폐 수탁업법제  
중 국 「암호법」  
국제기구 해상 사이버 리스크 규범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국  
회  
리

# 독일의 암호화폐 수탁업 관련 법제 주요 내용

김성곤 | 고려대학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 I. 들어가며

2020년 1월 1일 「제4차 유럽 자금세탁방지지침의 개정을 위한 지침」(이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sup>1)</sup>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법률」(이하 ‘국내수용법’)<sup>2)</sup>이 발효되었다. 동 법률의 발효와 동시에 독일에서의 암호화폐<sup>3)</sup> 수탁업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로서 「은행법(Gesetz über das Kreditwesen, KWG)」의 규제 대상이 되었다. 종전에도 암호화폐 수탁업은 「은행법」상의 적격성에 따른 규제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였지만 서면으로 표시된 행정관행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한 규제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금융감독청(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은 2020년 3월 20일 「암호화폐 수탁업의 적격성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sup>4)</sup> 동 「지침」의 발표와 함께 이 분야 역시 공식적으로 「금융감독법」상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sup>5)</sup>

1 Richtlinie (EU) 2018/843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30. Mai 2018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EU) 2015/849 zur Verhinderung der Nutzung des Finanzsystems zum Zwecke der Geldwäsche und der Terrorismusfinanzierung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n 2009/138/EG und 2013/36/EU (ABl. L 156 S. 43 vom 19.06.2018).

2 Gesetz zur Umsetzung der Änderungsrichtlinie zur Vierten EU-Geldwäscherichtlinie, BGBl. I vom 19. Dezember. 2019, S. 2602.

3 암호화폐라는 명칭은 교환 수단으로 한정해 볼 때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자적인 가치의 단위 중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대부분 토큰 또는 코인이라고 불리우며, 국제적으로는 암호자산(Crypto Assets) 또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이라는 개념에 포섭되는 것들을 말한다, <https://www.fsb.org/wp-content/uploads/P310519.pdf>.

4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5 <https://www.cms-hs-bloggt.de/banking-finance/die-kryptoverwahrung-auf-dem-weg-in-den-aufsichtsrechtlichen-alltag/>.

앞으로 독일 내에서 이러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up>6)</sup> 다만, 동 법이 발효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 법률의 발효와 함께 「은행법」 제1조 제1a항 제2문 Nr. 6에 따른 암호화폐 수탁 업무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동법 제64y조가 적용된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64y조에 따라 동 법률의 발효시부터 요구되는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허가를 임시로 받은 것으로 본다.<sup>7)</sup> 해당 기업들은 의도의 통지 시점과 관계없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중범죄로 인한 이득의 추적에 관한 법률(Geldwäschegesetz) (이하 ‘자금세탁방지법’)이라 한다.<sup>8)</sup> 제2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의무자가 된다.<sup>9)</sup>

이하에서는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발표한 「암호화폐 수탁업에 관한 지침」을 중심으로 그 암호화폐 수탁업의 요건, 허가를 받을 의무 및 경과규정 등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암호화폐 수탁업의 요건

암호화폐 수탁업의 개념은 독일 「은행법」에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 동법 제1조 제1a항 제2문 Nr. 6에 그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수탁업이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암호화폐 그 자체 또는 암호화폐의 보유, 저장 및 그 이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키의 보관, 관리 및 보안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sup>10)</sup>

6 BaFin, Geldwäscherechtliche Hinweise für Institute, die das Kryptoverwahrgeschäft erbringen, als Neu-Verpflichtete nach dem Geldwäschegesetz(GWG) vom 14. 05. 2020, S. 1.

7 BaFin, Geldwäscherechtliche Hinweise für Institute, die das Kryptoverwahrgeschäft erbringen, als Neu-Verpflichtete nach dem Geldwäschegesetz(GWG) vom 14. 05. 2020, S. 1.

8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n Straftaten.

9 이에 대한 상세는 BaFin, Geldwäscherechtliche Hinweise für Institute, die das Kryptoverwahrgeschäft erbringen, als Neu-Verpflichtete nach dem Geldwäschegesetz(GWG) vom 14. 05. 2020, S. 1.

10 § 1 Abs. 1a Satz 2 Nr. 6 KWG.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에 공표된 유럽연합(EU)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법률」<sup>11)</sup>에 따라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도입된 것이다.<sup>12)</sup>

지금까지는 「은행법」 제1조 제11항 제1문 Nr. 7에서 의미하는 계산상의 단위(Rechnungseinheit)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동법 제1조 제11항 제1문의 기타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암호화폐에 대한 영업상의 거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이 있는 암호화폐의 모든 사용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로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였다.<sup>13)</sup> 이에 따라 이러한 암호화폐들을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암호화폐 수탁업을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sup>14)</sup> 따라서 암호화폐 그 자체 또는 암호화폐의 보관, 저장 및 이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키를 타인을 위하여 보관, 관리 및 보안조치를 하는 자는 암호화폐 수탁업에 대한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개별적인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15)</sup>

## 1. 암호화폐 그 자체 또는 개인 암호키

독일 「은행법」은 제1조 제11항 제1문 Nr. 10에 암호화폐(Kryptowerte)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조 제11항 제4문에는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있다. 「은행법」에서 의미하는 암호화폐라 함은 가치에 대한 전자적인 표시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중앙은행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을 하였거나 보장을 한 것이 아님
- 화폐 또는 금전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음
- 자연인 또는 법인이

11 BGBI. I S. 2602; 이하에서는 「국내수용법」이라 한다.

12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1.

13 BT-Drucksache 19/13827, S. 1.

14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48 f.

15 이에 대한 상세는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1 ff.

- 약정 또는 거래계의 실제관행에 따라
  - 교환 또는 지불수단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거나
  - 투자 목적으로 이용된 것
-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sup>16)</sup>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의미하는 암호화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sup>17)</sup>

- 「지급결제서비스감독법(Zahlungsdiensteaufsichtsgesetzes, ZAG)」에서 의미하는 전자화폐(E-Geld)
- 금전적인 가치물
  - 「지급결제서비스감독법」 제2조 제1항 Nr. 10의 요건을 충족<sup>18)</sup> 또는
  - 동법 제2조 제1항 Nr. 11에 따른 오로지 지급결제를 위해서만 이용이 되는 것<sup>19)</sup>

암호화폐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형태에 따라 「은행법」 제1조 제11항 제1문 Nr. 2, 3 및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증권, 투자상품) 또는 투자자산 등으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암호화폐의 잠재적인 다양한 응용 사례들을 모두 포섭하기에는 기존의 분류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sup>20)</sup>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sup>21)</sup>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지침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사례들을 포섭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16 Kryptowerte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digitale Darstellungen eines Wertes, der von keiner Zentralbank oder öffentlichen Stelle emittiert wurde oder garantiert wird und nicht den gesetzlichen Status einer Währung oder von Geld besitzt, aber von natürlichen oder juristischen Personen aufgrund einer Vereinbarung oder tatsächlichen Übung als Tausch- oder Zahlungsmittel akzeptiert wird oder Anlagezwecken dient und der auf elektronischem Wege übertragen, gespeichert und gehandelt werden kann.

17 §1 Abs. 11 Satz 5 KWG.

18 제한된 네트워크 내에서 또는 사회적 또는 조세상의 목적을 위해 아주 제한적인 포트폴리오 또는 수단을 갖춘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19 통신사업·통신서비스에 대한 지급 결제를 의미한다.

20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1.

21 <https://www.cms-hs-bloggt.de/banking-finance/die-kryptoverwahrung-auf-dem-weg-in-den-aufsichtsrechtlichen-alltag/>.

입법 이유에서는 자금세탁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은행법」 제1조 제11항 제1문 Nr. 10을 소위 포괄적 구성요건(Auffangtatbestand)으로 계획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22)</sup> 각각의 금융투자상품 카테고리들은 다소간 서로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암호화폐 역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그 구체적인 형태에 비추어 「은행법」 제1조 제11항 제1문에서 의미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23)</sup> 암호화폐의 개념에는 교환 및 지급결제 기능을 지닌 토큰뿐만 아니라,<sup>24)</sup> 투자에 이용되는 토큰, 예를 들면 소위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및 투자 토큰(investment token)도 포함된다.<sup>25)</sup> 이러한 증권형 토큰이나 투자 토큰들은 그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은행법」 제1조 제11항 제1문 Nr. 2, 3 및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증권(Schuldtitel), 투자상품(Vermögensanlage) 또는 투자자산(Investmentvermögen)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sup>26)</sup>

현행법상 증권형 토큰은 「유가증권예탁관리법(Depotgesetz)」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sup>27)</sup> 암호화폐가 동법에서 의미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탁행위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2문 Nr. 5에서 의미하는 유가증권 예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는 「은행법」 제1조 제1항 제2문 Nr. 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sup>28)</sup> 다만, 이러한 증권형 토큰의 이전 및 거래가 가능하고 토큰에 유가증권 유사한 권리가 부여된 때에는 유럽연합(EU) 「사업설명서 규칙」<sup>29)</sup> 및 「제2차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sup>30)</sup>에서 의미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유가증권 사업설명서법에 따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sup>31)</sup>

22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09.

23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09.

24 이러한 토큰은 이미 「은행법」 제1조 제11항 제1문 Nr. 7에서 의미하는 계산의 단위에 해당된다.

25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2.

26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10.

27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2.

28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09.

29 Verordnung (EU) 2017/1129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4. Juni 2017 über den Prospekt, der beim öffentlichen Angebot von Wertpapieren oder bei deren Zulassung zum Handel an einem geregelten Markt zu veröffentlichen ist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2003/71/EG.

30 Richtlinie 2014/65/EU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5. Mai 2014 über Märkte für Finanzinstrumente sowie zur Änderung der Richtlinien 2002/92/EG und 2011/61/EU.

31 vgl. "Initial Coin Offerings: Hinweisschreiben zur Einordnung als Finanzinstrumente" sowie "zweites Hinweisschreiben zu Prospekt- und Erlaubnispflichten im Zusammenhang mit der Ausgabe sogenannter Krypto-Token."



국내 및 외국의 법정 지불수단에 해당되는 때에는 암호화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sup>32)</sup> 또한 「은행법」 제1조 제11항 제5문에 따른 전자화폐, 콘체른 내의 지급결제 시스템 및 통신망 또는 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지급결제수단 역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sup>33)</sup> 이를 통해 「제5차 자금세탁개정지침」 검토이유 10이 독일법에 반영되었다.<sup>34)</sup>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발행인 또는 제3자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전자 바우처 역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sup>35)</sup> 이러한 바우처는 그 의도하는 바에 따라 오로지 발행인에 대한 상환의 방법에 의해서만 그 경제적 기능이 부여되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하고 그 성질상 바우처의 가격의 상승 또는 발행인이나 제3자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투자자와 유사한 기대권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sup>36)</sup> 또한 독자적인 거래가 불가능하고 통상의 교환 및 지불 수단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는 제휴사간 포인트 상호교환 프로그램(Multipartnerprogramm)에 따른 전자바우처 역시 암호화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sup>37)</sup>

암호화폐는 기술적으로는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Technology, DLT)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양자는 대부분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을 막기 위해 비대칭 암호기술을 이용한다. 이 암호화 기법은 문자와 숫자로 조합된 문자열 형태의 공개키 및 개인키로 구성된 한 쌍의 키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공개키는 시스템 내에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열람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거래에 참여를 하는 참여자들의 계정 주소를 식별하기에 각 개별 이용자의 계정 주소로 이용된다. 각 개별 시스템마다 지원되는 암호화폐들은 바로 이 주소에 할당된다. 공개키에 대응하는 개인키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만 알려져 있으며 계정 주소에 할당된 암호화폐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오로지 개인키를 통해서만 특정 이용자의 암호화폐는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인 처분권한으로 인하여 암호화폐 수탁업의 적격 요건은 개인키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존재하는 단계부터 구비하여야 한다.<sup>38)</sup>

32)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10.

33) vgl. BaFin, Merkblatt - Hinweise zum Zahlungsdienstleistungsaufsichtsgesetz(ZAG).

34)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10.

35)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2.

36)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10.

37)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2.

38)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2.

## 2. 타인을 위할 것

「은행법」 제1조 제1a항 제2문 Nr. 6의 개정에 따라 허가를 요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주가 소위 암호화폐 수탁업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하여’ 암호화폐 그 자체 또는 암호화폐의 보유, 저장 및 그 이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키의 보관, 관리 및 보안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자<sup>39)</sup>는 「은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서면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한다. ‘타인을 위하여’라는 요건에는 자신의 기업 외부의 개인 또는 다수를 위하여 보관, 관리 또는 저장을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암호화폐 수탁업의 이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통한 대리권의 형태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up>40)</sup>

특히 암호화폐 보유자 스스로 자신의 암호화폐를 보관, 관리 또는 저장을 하거나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사용자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진정한 인적 회사의 결합에 따른 업무 범위 내에서 다른 사원에 의한 노동분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은 타인을 위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긴밀한 친족관계 구성원을 위해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관리하는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타인을 위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sup>41)</sup>

## 3. 보관, 관리 및 보안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핵심은 암호화폐의 수탁으로 이는 제3자를 위한 서비스에 해당된다.<sup>42)</sup> 법률의 개정과 함께 암호화폐 그 자체 또는 암호화폐를 보유, 저장 또는 이전하는데 이용되는 암호화된 개인키에 대한 보관, 관리 및 보안 서비스 등이 법적인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다.<sup>43)</sup>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보관, 관리, 보안 중 어느 하나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32조 제1항 제 1문에 따른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sup>44)</sup> 법문에 따르면 암호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보유, 저장 또는 이전하는데 이용되는 암호화된 개인키에 대한 보관, 관리 및 보

39 § 1 Abs. 1a Satz 2 Nr. 6 KWG.

40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2.

41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2.

42 <https://www.twobirds.com/de/news/articles/2020/germany/german-crypto-market-what-you-need-to-know-about-the-crypto-depository-service>.

43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09.

44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2.

안 조치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sup>45)</sup>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보관이라 함은 제3자를 위한 서비스로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것을 말한다.<sup>46)</sup> 우선 먼저 고객들이 암호화폐의 보관에 사용되는 암호키를 보유하지 않고 고객들의 암호화폐를 혼장임치의 형태로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여기에 해당된다.<sup>47)</sup>

이러한 서비스에는 암호화폐의 관리도 포함된다. 입법이유에 의하면, 관리라 함은 광의의 의미로 암호화폐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sup>48)</sup>

보안조치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서비스로 제공하는 암호화된 개인키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키가 저장된 물리적인 저장매체(USB 또는 종이)에 대한 보관 역시 포함된다.<sup>49)</sup> 단순히 저장 공간만을 제공하는 행위는, 예를 들면 웹호스팅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를 통한, 이러한 서비스 제공업자가 암호화된 개인키의 저장을 위한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sup>50)</sup>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단순히 암호화폐 지갑(Krypto-Wallets)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sup>51)</sup> 다만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가 저장을 한 암호화폐 또는 개인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를 하는 암호화폐 또는 암호화된 개인키의 저장을 위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거나 판매를 하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sup>52)</sup> 암호화된 개인키에 대한 수탁을 통해 주어진 암호화폐가 분산되어 저장된 공개 주소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sup>53)</sup>

45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09.

46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09.

47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2.

48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09.

49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09.

50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09.

51 <https://www.it-finanzmagazin.de/kryptowerte-regelungen-rechtsaenderungen-zum-1-januar-kryptotoken-99282/>.

52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2.

53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2.

#### 4.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암호화폐 수탁업자

「자금세탁방지법」 제2조 제1항은 협력 의무가 있는 사인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sup>54)</sup> 개정지침과 마찬가지로 「국내수용법」에도 소위 가상화폐(virtuelle Währungen)분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 역시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금융서비스 기관으로서 암호화폐 수탁업을 영위하는 자도 동법 제2조 제1항 Nr. 2에 따른 의무자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sup>55)</sup> 따라서 독일 내에서 암호화폐 수탁업을 영위하는 자도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sup>56)</sup>

동법에 따라 가상화폐를 법정 지불수단으로 교환을 하거나 그 반대 및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금융서비스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의무자에 해당된다.<sup>57)</sup> 암호화폐는 그 형태에 따라 「은행법」 제1조 제11항 제1문에서 의미하는 금융상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법」에서 의미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들은 동법 제1조 제1항 제2문, 제1a항 제2문에 따른 은행업 또는 금융서비스업의 범주에 속한다.<sup>58)</sup>

암호화폐 수탁업자는 「은행법」상의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의무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암호화폐 수탁업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의무를 준수하는 외에 자금세탁방지 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를 두어야 하며 위험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부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담당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신뢰성이 검증된 자이어야 한다.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제3자를 위한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의심스러운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Zentralstelle für Finanztransaktionsuntersuchungen, FIU)」<sup>59)</sup>에 신고하여야 한다.

54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1.

55 BaFin, Geldwäscherechtliche Hinweise für Institute, die das Kryptoverwahrgeschäft erbringen, als Neu-Verpflichtete nach dem Geldwäschegesetz(GWG) vom 14. 05. 2020, S. 1.

56 BaFin, Geldwäscherechtliche Hinweise für Institute, die das Kryptoverwahrgeschäft erbringen, als Neu-Verpflichtete nach dem Geldwäschegesetz(GWG) vom 14. 05. 2020, S. 1.

57 이에 대한 상세는 BaFin, Geldwäscherechtliche Hinweise für Institute, die das Kryptoverwahrgeschäft erbringen, als Neu-Verpflichtete nach dem Geldwäschegesetz(GWG) vom 14. 05. 2020.

58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48.

59 Financial Intelligence Unit in Germany, [https://www.zoll.de/DE/FIU/fiu\\_node.html](https://www.zoll.de/DE/FIU/fiu_node.html).

### III. 기타 규제 사항과의 구분

#### 1. 적격 요건으로서의 암호화폐

독립적인 적격 요건은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 검토이유 Nr. 10을 반영한 것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모든 잠재적인 적용 사례들을 「자금세탁방지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sup>60)</sup> 이러한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적격 요건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에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 영역으로 편입하면서 암호화폐 수탁업을 적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금융서비스로 분류하게 된 것이다.<sup>61)</sup>

#### 2.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세탁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자적인 가치표시들을 「은행법」 제1조 제11항 제1문 Nr. 10에서 의미하는 암호화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sup>62)</sup> 다만, 「은행법」 제1조 제11항 제1문 Nr. 3에서 말하는 채무증권으로서 유가증권 사업설명서법상의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자본투자법(Kapitalanlagegesetzbuch, KAGB)」 제1조 제3항에서 말하는 대체투자를 위해 암호화폐를 관리 또는 보관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1조 제1a항 제2문 Nr. 12에서 의미하는 제한적인 수탁업에 대한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sup>63)</sup>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의 예탁에 관한 법률(Depotgesetz)」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수탁업무는 「은행법」 제1조 제1항 제2문 Nr.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탁업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법 제1조 제1a항 제2문 Nr. 6은 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sup>64)</sup>

■■■■■■■■

60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48.

61 <https://www.cmshs-bloggt.de/banking-finance/die-kryptoverwahrung-auf-dem-weg-in-den-aufsichtsrechtlichen-alltag/>.

62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09.

63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09.

64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09.

### 3. 중앙예탁기관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

암호화폐가 유럽연합(EU) 「중앙증권예탁원규칙(Zentralverwahrrverordnung, CSDR)」<sup>65)</sup> 제2조 제1항 Nr. 8에 규정된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고 동 규칙의 부칙 A장(Section A)에 따른 유가증권의 인도 및 결제 시스템의 운영과 동시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적인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암호화폐의 보관행위는 「은행법」 제1조 제2항 Nr.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예탁기관의 업무에 해당된다.<sup>66)</sup> 따라서 이 때에는 「은행법」 제1조 제1항 제2문 Nr. 6는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sup>67)</sup> 따라서 CSDR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예탁기관으로서의 허가를 이미 획득한 사업자가 그 구체적인 형태로 인하여 CSDR 및 MiFID II에서 의미하는 유가증권으로 취급되는 증권형 토큰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폐 수탁업을 영위하게 위해 새로운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CSDR에 규정된 허가유보부금지는 특별법상의, 따라서 우선적인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sup>68)</sup>

「중앙증권예탁원규칙(Zentralverwahrrverordnung, CSDR)」 제2조 제1항 Nr. 35 및 「제2차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 제4조 제1항 Nr. 44에서 의미하는 이전이 가능한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증권형 토큰이 「제2차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에 따른 거래소(규제시장, 다자간 또는 조직화된 거래 시스템)에 상장되거나 거래가 되는 때에는 「중앙증권예탁원규칙(Zentralverwahrrverordnung, CSDR)」 제3조에 따른 “이전이 가능한 유가증권(übertragbare Wertpapiere)으로서 발행을 할 때에 이를 최초로 중앙예탁기관의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사업자가 동시에 「중앙증권예탁원규칙(Zentralverwahrrverordnung, CSDR)」 제2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중앙예탁기관의 정의에 부합하는 유럽연합(EU)의 「지급결제완결성지침(Finalitätsrichtlinie, SFG)」<sup>69)</sup>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 고객계좌부에 최초로 유가증권을 기재하거나 (공증, notarielle Dienstleistung) 최상위 영역에서 예탁계좌(Depotkonten)를 제공하

65 Verordnung (EU) Nr. 909/2014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3. Juli 2014 zur Verbesserung von Wertpapierlieferungen und -abrechnungen in der Europäischen Union und über Zentralverwahrer sowie zur Änderung der Richtlinien 98/26/EG und 2014/65/EU und der Verordnung (EU) Nr. 236/2012.

66 vgl. Bericht des Finanzausschusses, BT-Drs. 19/15196, S. 10.

67 vgl. Bericht des Finanzausschusses, BT-Drs. 19/15196, S. 10.

68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3.

69 Richtlinie 98/26/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9. Mai 1998 über die Wirksamkeit von Abrechnungen in Zahlungs- sowie Wertpapierliefer- und -abrechnungssystemen.

거나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계좌관리, zentrale Kontoführung)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sup>70)</sup> 고객의 증권형 토큰 또는 그에 속하는 암호화된 개인키를 보관하며 고객을 위하여 제3자에게 토큰을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솔루션에 대하여 중앙예탁기관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다.<sup>71)</sup> 이에 대한 판단은 보관이나 저장의 구체적인 모습, 증권형 토큰의 기초가 되는 기술의 작동 원리(Funktionsweise) 및 참여자들 사이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리 하여야 한다.<sup>72)</sup>

## 4. 금융기관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

신용기관 내지 금융기관이 현재의 영업 범위 내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서비스, 예를 들면 금융중개, 모집, 인수행위(「은행법」 제1조 제1항 제2문 Nr. 4, 10, 제1a항 제2문 Nr. 1c)를 하는 때에는, 해당 고객의 암호화폐 업무의 처리에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는 암호화폐 수탁업의 영위를 위해 별도의 허락을 요하지 아니한다.<sup>73)</sup>

## 5. 소위 유럽 단일신고절차(Europäischer Pass)의 적용 제외

유럽 회원국 내에서 은행업 및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위 단일신고절차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즉, 유럽 경제 지역내의 금융기관이 유럽 경제공동체 내의 한 국가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른 국가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은행업 또는 금융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단일신고절차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 수탁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가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은행법」 제1조 제1a항 제2문 Nr. 6).<sup>74)</sup>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적격성 지침은 유럽법상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75)</sup> 이 요건은 개정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입이 되었으며 해당 지침은 유럽연합(EU) 내에서 통일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sup>76)</sup>

.....

70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ungs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3.

71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ungs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3.

72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ungs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3.

73 vgl. Bericht des Finanzausschusses, BT-Drs. 19/15196, S. 10.

74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ungs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3.

75 <https://www.cms-hs-bloggt.de/banking-finance/die-kryptoverwahrung-auf-dem-weg-in-den-aufsichtsrechtlichen-alltag/>.

76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ungs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3.

## VI. 암호화폐 수탁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의무

독일 연방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인적인 방법으로 조직된 영업활동을 요하는 수준으로 은행업을 영위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은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서면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한다.<sup>77) 78)</sup> 사업자의 거래규모나 업무영역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인적 방법으로 조직된 영업활동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은행업 또는 금융서비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윤을 추구할 목적에는 손실을 회피할 목적도 포함된다.<sup>79)</sup> 허가없이 이러한 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때에는 동법 제54조 제1항 Nr. 2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와 유사한 대체 수단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도 영업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기업의 법적 형태(자연인, 인적회사, 법인)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sup>80)</sup>

상인적 방법으로 조직된 영업이 실제로 영위되었느냐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은행업 분야의 거래 통념상(즉, 보통의 상인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러한 영업상의 조직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사안별로 판단을 하여야 하며 동시에 다수의 은행 또는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비교적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sup>81)</sup>

영업이 국내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은행법」 제32조 제1항의 허가유보부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sup>82)</sup> 사업자가 국외에서 오로지 비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도 해당 사업장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국내에 법적으로 비독립적인 지점을 두고 있거나, 다른 물리적인 거소를 두고 그 곳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sup>83)</sup> 오로지 비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up>84)</sup>

77 암호화폐 수탁업의 허가 신청과 관련한 상세는 BaFin, Hinweise zum Erlaubnis Antrag für das Kryptoverwahrgeschäft vom 1. April. 2020.

78 vgl. Deutsche Bank, Merkblatt über die Erteilung einer Erlaubnis zum Erbringen von Finanzdienstleistungen gemäß § 32 Absatz 1 KWG vom 25. Juli 2020, S. 2.

79 vgl. Deutsche Bank, Merkblatt über die Erteilung einer Erlaubnis zum Erbringen von Finanzdienstleistungen gemäß § 32 Absatz 1 KWG vom 25. Juli 2020, S. 2.

80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3.

81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3.

82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3.

83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3.

84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3.



마지막으로 국내에 중개인 또는 물리적인 주소를 두지 않고 국외에서 원거리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초국가적인 자유로운 이동의 방법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통상적인 거소를 독일 내에 두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sup>85)</sup>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영위되는 은행업 또는/및 국제적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은행법」 제1조 제1항 및 제1a항을 준용한 「은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의무에 대한 지침」<sup>86)</sup>에 소개되어 있다.

## VI. 경과규정 - 「은행법」 제64y조

독일 연방 「은행법」이 적용되는 독일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인적 방법으로 조직된 영업을 필요로 하는 정도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서면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한다(§ 32 Abs. 1 Satz 1 KWG). 2020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수탁업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은행법」의 규제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독일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및 회사는 동 법에 따른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sup>87)</sup> 이에 대한 허가는 원칙적으로 영업 활동의 개시 전에 존재하여야 한다.<sup>88)</sup> 이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한 자는 동법 제54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동 법이 발효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내부 시스템 및 절차를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법상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sup>89)</sup> 즉, 동 법률의 발효와 함께 「은행법」 제1조 제1a항 제2문 Nr. 6에 따른 암호화폐 수

85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3.

86 vgl. BaFin, Merkblatt zur Erlaubnispflicht von grenzüberschreitend betriebenen Geschäften vom 01. April. 2005, geändert am 11. März 2019.

87 BaFin, Geldwäscherechtliche Hinweise für Institute, die das Kryptoverwahrgeschäft erbringen, als Neu-Verpflichtete nach dem Geldwäschegesetz(GWG) vom 14. 05. 2020, S. 1.

88 Deutsche Bank, Merkblatt über die Erteilung einer Erlaubnis zum Erbringen von Finanzdienstleistungen gemäß § 32 Absatz 1 KWG vom 25. Juli 2020, S. 2.

89 BaFin, Hinweise zum Erlaubnisantrag für das Kryptoverwahrgeschäft vom 1. April. 2020, S. 2.

탁 업무의 적격요건을 갖춘 기업들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동법 제64y조가 적용된다.<sup>90)</sup> 경과규정에는 2020년 1월 1일자의 허가규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sup>91)</sup> 이에 따라 동 법의 발효 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는 동 법률의 발효시부터 요구되는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허가를 임시로 받은 것으로 본다.<sup>92)</sup> 「은행법」 제64y조의 허가규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자는 의도의 통지 시점과 관계없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의무자가 된다.<sup>93)</sup>

이와 관련하여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지침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sup>94)</sup>

## 1.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 및 계약에 의해 수탁업을 영위하는 중개인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내지 금융서비스업자가 아니었던 자가 동 법률의 발효 전에 「은행법」 제1제 제11항에서 의미하는 암호화폐 수탁업무를 영위하던 자로서, 개정된 「은행법」 제1조 제1a항 제2문 Nr. 6에 따라 금융서비스기관(Finanzdienstleistungsinstitute)<sup>95)</sup>이 된 자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영업에 관한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동시에 영업 허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2020년 3월 31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sup>96)</sup> 두 가

90 「은행법」 제64y조는 다음과 같다:

- (1) 「은행법」 제1조 제1a항 제2문 Nr. 6의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1월 1일 금융서비스 기관이 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가 2020년 3월 31일까지 연방금융감독청(BaFin)에 대하여 허가 신청을 할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동년 11월 30일까지 동법 제32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한 때에는 동법 제64y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에 암호화폐 수탁업의 영위를 위한 허가를 임시적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 제1문에 따른 기업이 2020년 1월 1일 동법 제2조 제10항에 따른 계약상의 중개인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때에는 이러한 계약상의 중개인으로서의 영업 활동 외에 2020년 11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암호화폐 수탁업을 영위할 수 있다.
- (2) 「은행법」 제1조 제11항에서 의미하는 금융상품의 개념이 2020년 1월 1일 암호화폐로 확대됨으로 인해 동법 제32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할 의사를 2020년 3월 31일까지 연방금융감독청(BaFin)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동년 11월 30일까지 동법 제32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한 때에는 이 법률에 따라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영위를 위한 허가를 잠정적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

91 BaFin, Hinweise zum Erlaubisantrag für das Kryptoverwahrgeschäft vom 1. April. 2020, S. 2.

92 BaFin, Geldwäscherechtliche Hinweise für Institute, die das Kryptoverwahrgeschäft erbringen, als Neu-Verpflichtete nach dem Geldwäschegesetz(GWG) vom 14. 05. 2020, S. 1.

93 BaFin, Hinweise zur Auslegung des § 64y KWG vom 17. Jan. 2020, S. 1.

94 이에 대한 상세는 BaFin, Hinweise zur Auslegung des § 64y KWG vom 17. Jan. 2020.

95 금융서비스기관에 대한 상세는 Deutsche Bank, Merkblatt über die Erteilung einer Erlaubnis zum Erbringen von Finanzdienstleistungen gemäß § 32 Absatz 1 KWG vom 25. Juli 2020, S. 2 ff.

96 vgl. Deutsche Bank, Merkblatt über die Erteilung einer Erlaubnis zum Erbringen von Finanzdienstleistungen gemäß § 32 Absatz 1 KWG vom 25. Juli 2020.

지 조건이 충족된 때에는 동법 제64y조 제1항에 의해 「은행법」 제32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의 구속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암호화폐 수탁업의 영위를 위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허가 절차의 진행 상황은 문제되지 아니한다.<sup>97)</sup>

2020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 제2조 제10항에 따른 계약상의 중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sup>98)</sup> 역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영업 활동 이외에 2020년 11월 30일까지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수탁 업무를 할 수 있다.<sup>99)</sup>

## 2. 아직까지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은행업 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사업자가 이미 은행업 또는 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고 동 법률의 발효에 따라 「은행법」 제11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금융상품의 개념이 암호화폐로 확대됨으로 인해 동법 제32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허가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2020년 11월 30일까지 허가 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이러한 신청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동법 제32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동법 제64y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법률 상황에 따라 허가를 요하는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sup>100)</sup>

영업활동과 관련된 암호화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법률에 따라 다른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때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트코인 또는 다른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가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종류의 암호화폐들은 2019년 12월 13일 이전에 이미 「은행법」 제1조 제11항 제1문 Nr. 7 후단에서 의미하는 '계산의 단위'에 포섭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은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금세탁방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의무

97 BaFin, Geldwäscherechtliche Hinweise für Institute, die das Kryptoverwahrgeschäft erbringen, als Neu-Verpflichtete nach dem Geldwäschegesetz(GWG) vom 14. 05. 2020, S. 1.

98 이에 대한 상세는 Deutsche Bank, Merkblatt über die Erteilung einer Erlaubnis zum Erbringen von Finanzdienstleistungen gemäß § 32 Absatz 1 KWG vom 25. Juli 2020, S. 14 f.

99 BaFin, Hinweise zur Auslegung des § 64y KWG vom 17. Jan. 2020, S. 1.

100 BaFin, Hinweise zur Auslegung des § 64y KWG vom 17. Jan. 2020, S. 1.

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sup>101)</sup>

### 3. 이미 은행업 허가를 받은 자

이미 은행업 내지 금융서비스업의 영위를 위한 은행업 허가를 받고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64y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sup>102)</sup> 이미 은행업 내지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허가를 득한 사업자가 현행 법률에 따라 허가를 필요로 하는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은행법」 제64y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sup>103)</sup> 해당 사업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새로운 영업활동의 개시 전에 「은행법」 제32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sup>104)</sup>

### 4. 해외에 그 주소를 둔 자로서 암호화폐 수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의무는 유럽 경제공동체 밖의 국가에 주소를 둔 기업으로서 독일 국내에 설치된 지점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준용된다.<sup>105)</sup>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지점은 「은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본다.<sup>106)</sup> 즉, 「은행법」 제1조 제1a항 제2문 Nr. 6에서 의미하는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자국 내에 주소를 두고 영위하고 있는 외국 사업자도 독일 내에 주소 내지 거소를 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은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의무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sup>107)</sup> 외국인 사업자는 「은행법」 제64y조 제1항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1문 Nr. 6 또는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불허사유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외국 사업자가 허가신청의 제출 시까지, 즉 늦어도 2020년 11월 30일까지, 경과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2020

101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48 f.

102 BaFin, Hinweise zur Auslegung des § 64y KWG vom 17. Jan. 2020, S. 1.

103 BaFin, Hinweise zur Auslegung des § 64y KWG vom 17. Jan. 2020, S. 1.

104 BaFin, Hinweise zur Auslegung des § 64y KWG vom 17. Jan. 2020, S. 1.

105 이에 대한 상세는 BaFin, Merkblatt zur Erlaubnispflicht von grenzüberschreitend betriebenen Geschäften.

106 vgl. Deutsche Bank, Merkblatt über die Erteilung einer Erlaubnis zum Erbringen von Finanzdienstleistungen gemäß § 32 Absatz 1 KWG vom 25. Juli 2020, S. 27.

107 BaFin, Merkblatt zur Erlaubnispflicht von grenzüberschreitend betriebenen Geschäften vom 01. April 2005, geändert am 11. 3. 2019, S. 1.

년 1월 1일에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해당 사업자 또는 신청을 하는 기업이 허가 신청을 위한 의도를 2020년 3월 31일까지 통보한 것으로 족하다.

## VII. 결론

유럽연합(EU)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의 「국내수용법」이 발효됨에 따라 독일 내에서 암호화폐 수탁업은 금융감독법상의 일상적인 규제 대상이 되었다.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암호화폐 수탁업자를 위한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서비스로서의 암호화폐 수탁업에 대한 기존의 행정관행을 명문화하였다. 지침에는 암호화폐 수탁업 요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는 특히 기존의 암호화폐 월렛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수탁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와 관련 산업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요청에 호응하여 암호화폐 수탁업과 관련한 법률의 적용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 내지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특정한 암호화폐들을 법률의 규제를 받는 금융서비스상품으로 포섭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영업 활동을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침은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적인 규제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구축함으로써 금융 허브로서의 독일의 입지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외의 시장 참여자들을 독일 내로 유치하고 새로운 기업의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독일 내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금융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BaFin, Geldwäscherechtliche Hinweise für Institute, die das Kryptoverwahrgeschäft erbringen, als Neu-Verpflichtete nach dem Geldwäschegesetz (GWG) vom 14. 0. 2020.
- BaFin, Hinweise zum Erlaubnisantrag für das Kryptoverwahrgeschäft vom 1. April. 2020.
- BaFin, Hinweise zur Auslegung des § 64y KWG vom 17. Jan. 2020.
- BaFin, Initial Coin Offerings: Hinweisschreiben zur Einordnung als Finanzinstrumente (Geschäftszeichen GZ: WA 11-QB 4100-2017/0010).
-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 BaFin, Merkblatt – Hinweise zum Zahlungsdienstenaufsichtsgesetz (ZAG).
- BaFin, Merkblatt zur Erlaubnispflicht von grenzüberschreitend betriebenen Geschäften vom 01. April. 2005, geändert am 11. März 2019.
- BaFin, Merkblatt: Zweites Hinweisschreiben zu Prospekt- und Erlaubnispflichten im Zusammenhang mit der Ausgabe sogenannter Krypto-Token (GZ: WA 51-Wp 7100-2019/0011 und IF 1-AZB 1505-2019/0003).
- Bericht des Finanzausschusses, BT-Drs. 19/15196.
- BT-Drucksache 19/13827.
- Deutsche Bank, Merkblatt über die Erteilung einer Erlaubnis zum Erbringen von Finanzdienstleistungen gemäß § 32 Absatz 1 KWG vom 25. Juli 2020.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in Germany, <https://www.zoll.el/DE/FIU/findone.html>.
- Gesetz zur Umsetzung der Änderungsrichtlinie zur Vierten EU-Geldwäscherichtlinie vom 19. Dezember. 2019.
- Richtlinie 98/26/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9. Mai 1998 über die Wirksamkeit von Abrechnungen in Zahlungs- sowie Wertpapierliefer- und -abrechnungssystemen.
- Richtlinie (EU) 2018/843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30. Mai 2018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EU) 2015/849 zur Verhinderung der Nutzung des Finanzsystems zum Zwecke der Geldwäsche und der Terrorismusfinanzierung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n 2009/138/EG und 2013/36/EU (ABl. L 156 S. 43 vom 19. 6. 2018).

## 참고문헌

- Verordnung (EU) Nr. 909/2014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3. Juli 2014. zur Verbesserung von Wertpapierlieferungen und -abrechnungen in der Europäischen Union und über Zentralverwahrer sowie zur Änderung der Richtlinien 98/26/EG und 2014/65/EU und der Verordnung (EU) Nr. 236/2012.
- Verordnung (EU) 2017/1129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4. Juni 2017 über den Prospekt, der beim öffentlichen Angebot von Wertpapieren oder bei deren Zulassung zum Handel an einem geregelten Markt zu veröffentlichen ist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2003/71/EG.

## 기타

- <https://www.cmshs-bloggt.de/banking-finance/die-kryptoverwahrung-auf-dem-weg-in-den-aufsichtsrechtlichen-alltag/>.
- <https://www.it-finanzmagazin.de/kryptowerte-regelungen-rechtsaenderungen-zum-1-januar-kryptotoken-99282/>.
- <https://www.twobirds.com/de/news/articles/2020/germany/german-crypto-market-what-you-need-to-know-about-the-crypto-depository-service>.

# KLRI

##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http://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 홈페이지 접속 → 좌측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하기 GO”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mailto:foreignlaw@klri.re.kr)
-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82  
E-Mail. [foreignlaw@klri.re.kr](mailto:foreignlaw@klri.re.kr)

FAX. (044) 868-9919  
[www.klri.re.kr](http://www.klri.re.kr)

###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ISSN 1976-0760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